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2776
-----------	------

2021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은주 의원 외 11명 발의

나.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4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에서 발생하는 점유 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사 편의성 위주가 아닌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높이

기 위해 도로점유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시행자는 변경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함(안 제6조 제4호)
-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시 필요할 경우 자문회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 자문회의는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월2회 이상의 소집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제5항)
-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6항)
-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제8항)
-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함(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10.25.~11.1.

○ 제출의견: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원안가결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원안 가결

- 공사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확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장기 공사시 매년 새로운 소통대책을 검토하며, 공사완료 시 주변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1)에 따라 1개차로 이상의 도

1)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접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제4호나목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를 점용하는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고 2년간 공사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도록 하고, 자문회의의 운영과 역할을 확대하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함은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안 제6조 제4호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서울시로부터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공사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의 최근 교통흐름과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안 제8조 제3항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자가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자문

위원²⁾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요청 또는 개선명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교통소통대책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와 다르게 도로를 과다하게 점용하거나 공사장 주변의 노면표시, 차선 재도색 등 도로의 유지관리 소홀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거나 보행자통로 미확보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대책 이행 점검을 위한 인력의 부족으로 현장에서의 즉시 시정조치가 어려운 상황³⁾임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점검자로 지정된 관련 공무원이 필요시 자문위원을 대동하여 공사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한 상태에서 도로점용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안)보고, 교통운영과-10570

■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구성·운영(안 제9조 제5항, 제6항, 제8항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자문회의의 위원을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인력풀을 확보하고, ‘월 2회의 정기회의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었던 자문회의의 운영을 ‘월 2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자문회의는 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잦은 회의로 인한 자문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매 회의 당 평균 4~6건 등 매년 100건 이상의 심의를 진행⁴⁾함에 따라 각 사안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소수의 자문위원이 짧은 시간 내에 교통소통대책의 심의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기존 상황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유연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의 전체 인원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4)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안)보고, 교통운영과-10570

○ 1회당 평균건수: 4.1~6.3건/회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최횟수	19	22	22	24	25	19	19	19	26
심의건수	119	120	123	102	117	103	115	108	107
회당 평균 건수	6.3	5.5	5.6	4.2	4.7	5.4	6.1	5.7	4.1

자문위원의 수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자칫 부실한 자문회의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문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기간 1년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사 중 현장 상황은 물론 공사 준공과 더불어 변경된 교통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환경의 적합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원상회복 및 복구계획 (안 제13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기간 1년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자에 한하여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자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는 공사시행자가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만을 고려한 원상회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또는 장기계속 공사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공사 완료시점의 주변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원

상회복 뿐 만 아니라 복구계획까지 추가하여 대규모 공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의 원상회복보고서 외에 복구계획보고서를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자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공사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재정적 손실을 줄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공사현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표준 매뉴얼 개정 여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통행에 대한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⁵⁾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현장에서 심의과정 중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심 내 공사 시행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임

5)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안)보고, 교통운영과-1057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명 이상 15명”을 “15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회의”를 “2회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5명 이상의 출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원상회복)”을 “(원상회복 및 복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 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략)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2. (생략)

③·④ (생략)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생략)

<신설>

⑧ (생략)

제13조(원상회복) ① 공사를 시

행과 같음)

② -----
----- 15명 이상 30명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2회 이
상의-----

⑥ ----- 5명 이상
의 출석으로-----

⑦ (현행과 같음)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3조(원상회복 및 복구계획) ①

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 .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